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
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
합니다.

- 동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
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
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
목적으로 하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에
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
-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

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, 대상차량,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사항,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또한,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